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51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유용원 · 김예지 · 이만희  
성일종 · 조승환 · 김소희  
김재섭 · 이현승 · 김 건  
김성원 · 김미애 · 박정하  
강선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에 대한 자금융자, 보조금의 교부,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 전장의 양상이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해당 분야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

서 체계적으로 지정·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의 지정·육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첨단소재 등 국방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을 지정하려면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벤처기업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업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우선 선정 등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지정 대상·기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0조의3(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의 지정·육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첨단소재 등 국방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첨단전략산업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u></p> <p><u>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을 지정하려면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벤처기업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u>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p>

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업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우선 선정 등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지정 대상·기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